(2) 복합 공종의 설계

- (가) 발주자는 공종별 설계의 불일치 또는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설계기준을 공종별 설계자에게 전달한다.
- (나) 여러 공종이 복합된 건설공사의 경우 각 공종별 설계자는 공사 중 간섭 또는 중첩요인을 파악하여 공사 시작 전 사전 협의를 통하여 수정 또는 보완 되어야 한다.

(3) 안전관리계획 수립

- (가) 설계자는 시공자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설계단계에 반영된 다음과 같은 안전·보건 정보를 제공하여 안전하고 원할한 공사관리가 가능하도록 협조한다.
 - ① 설계과정 중에 실시한 건설 안전 · 보건에 관한 위험성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
 - ② 설계과정 중에 도출된 유해 ·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
 - ③ 설계에 반영된 시공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
 - ④ 설계단계에 제거하지 못한 유해·위험요인 관련 사항
 - ⑤ 시공 시 유의사항 및 유해 · 위험요인에 대한 대처방안 등
- (나) 설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라 시공자가 작성하여야 하는 유해· 위험방지계획서에 설계도서상 기 반영한 유해·위험요인 및 안전대책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.

(4) 가설구조물의 설계변경

- (가) 시공자는 건설공사 중에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 재해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건설공사 발주자에게 설계변경 을 요청할 수 있다.
- (나) 설계변경 요청 대상 가설구조물은 다음과 같다.
- ① 높이 31미터 이상인 비계(飛階)
- ②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 6미터 이상인 거푸집 동바리
- ③ 터널의 지보공(支保工) 또는 높이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
- ④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
- (다) 설계변경 요청시 의견을 들어야 하는 전문가의 범위는 산업안전보건법